

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3. 12. 12.>

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(제11조제3항 관련)

1. 요양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

$$\text{지급금액} = \frac{\text{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}}{30\text{일}} \times 0.13 \times \text{승인된 요양일수}$$

2.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$$\text{지급금액} = \frac{\text{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}}{30\text{일}} \times 0.13 \times 180\text{일} +$$

$$\frac{\text{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}}{30\text{일}} \times 0.0325 \times (\text{승인된 요양일수} - 180\text{일})$$

비고

1.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2.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되, 해당 연도 고시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다.